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 단
법 인

대한병원협회



SMART 2030

수 신 병원장

참 조

제 목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

1. 관련 근거 : 가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,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별지 제11호서식
나. 소방청 119구급과-5630(2024.10.28.)
2. 상기에 의거,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*인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(정보시스템, 서면, 팩스 등)하여야 합니다.
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1급감염병, 제2급감염병 중 결핵, 홍역, 수막구균 감염증, 「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」에 따른 감염병
3. 이와 관련하여, 2024.10.4자로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'별지 제11호 서식(감염병 발생 통보서)'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(주요 개정내용) ▲환자 내원일시 및 성별 정보 추가, ▲직업 정보 삭제, ▲환자 등 분류 상 의심자, 그밖의 경우 삭제

붙임. 별지 제11호서식(감염병 발생 통보서)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대리 허경재 팀장 최명희 국장 장은혜

시행: 정책국 제2024-359호(2024.10.29.)

(04165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 현대빌딩 13~14층 /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35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: 02-705-9209) E-mail: hkj@kha.or.kr